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1. 학칙 개정 사유

- 1) 외국인유학생(신입생) 경우 정원 내 입학생과 차별하여 교육과정 운영하도록 하며, 한국어 능력 강화 및 학업이수규정 개정하여 수업 운영의 효율성 방안 마련
- 2) 외국인전담학과 신설에 따라 외국인전담학과의 교육과정의 경우 탄력적으로 전략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영어 트랙 대상 수업의 경우 시간강사 강의료 절감을 통해 본교 재정절충 방안 마련 및 학생지원비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급하고자 함.

2. 학칙 주요 개정사항

■ 규정명 :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현행	개정안	비고
제25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 기준 학점은 16~17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1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 승인 없이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 기준 학점은 16~17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1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 승인 없이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영어트랙 학부 과정의 경우 학기당 취득 학점은 13~14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 ~ 1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6장 등록·교과 수업·학점 및 졸업 중 제25조 제26조 제27조 학칙 개정 사항
제26조(수료)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32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65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97학점 이상	제26조(수료)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32학점 이상 (단, 영어트랙의 경우 1학년 수료 26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65학점 이상 (단, 영어트랙의 경우 2학년 수료 53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97학점 이상 (단, 영어트랙의 경우 3학년 수료 79학점 이상)	
제27조(졸업에 필요한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고, 그에 따른 구성학점은 따로 정한다. ② 6학기 또는 7학기까지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 단,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유학생의 조기졸업은 평점평균 4.0 이상인 자로 한다.	제27조(졸업에 필요한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고, 그에 따른 구성 학점은 따로 정한다. ② 6학기 또는 7학기까지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 단,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유학생의 조기졸업은 평점평균 4.0이상인 자로 한다. ③ 영어트랙의 경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경우 110학점 이상으로 하고, 그에 따른 구성 학점은 따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3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당해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결정하여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우리 대학교 학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 승인 없이 수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제3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당해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결정하여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우리 대학교 학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 승인 없이 수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③ 전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이고, 포기과목이나 실격과목 없이 16학점 이상(영어트랙의 경우 13학점 이상) 취득한자는 최대 신청학점을 19학점(영어트랙의 경우는 16학점까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 학점 수 이하로 제한한다. <개정 2023.00.00>	해당 사항 추가 및 내용 첨삭
제42조(학사징계) ①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균 평점이 D(1.0)에 미달한 자 또는 3과목 이상 F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②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거나 재학 중 통산하여 4회를 받은 자는 학사 제적된다.	제42조(학사징계) ①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균 평점이 D(1.0)에 미달한 자 또는 3과목 이상 F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영어트랙 학부 과정의 경우 2과목이상 F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②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거나 재학 중 통산하여 4회를 받은 자는 학사 제적된다	

전주대학교 학칙 참고자료 사항

타 대학교(전주대학교) 학칙 제20조 수료

제20조(수료) 각 학년을 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간호학과 2022학번까지는 2015학번 기준을, 2023학번부터는 2017학번 이후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11.24., 2016.2.11., 2020.3.1., 2023.6.23.>

구 분	이수학기	취득학점					
		일반대학				미래융합대학	영어트랙
		2014학번 이전	2015학번	2016학번	2017학번 이후		
1학년	2	35	35	33	33	30	28
2학년	4	70	70	65	65	60	55
3학년	6	105	105	98	98	90	83
4학년	8	140	140	130	130	120	110
5학년	10	160	169	169	163	-	-

타 대학교(전주대학교) 학칙 제21조 졸업

제21조(졸업)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 및 졸업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4., 2016.2.11., 2020.3.1., 2023.6.23.>

구 분	이수학기	졸업학점				
		2014학번 이전	2015학번	2016학번	2017학번 이후	2023학번 이후

2-1-1-6 전주대학교 학칙

구 분	이수학기	졸업학점				
		2014학번 이전	2015학번	2016학번	2017학번 이후	2023학번 이후
일반학과	8	140	140	130	130	130
간호학과	8	140	140	140	140	130
건축학과	10	160	169	169	163	163
미래융합대학	8	-	-	-	120	120
영어트랙	8	-	-	-	-	110

해당규정 전문 개정사항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정 2000.03.01

최근개정 2023.08.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국민정서와 함께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분야를 선도할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전인적 인간양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14><개정 2004.10.8>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인간으로서 자질과 품격을 도야하며 특히 예술에 관한 전문 지식과 재능을 개발 연마하여 우리의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 공헌할 전문 예술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편제) ① 전북희망캠퍼스에 교양학부, 미술조형디자인학부(융합조형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미술조형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애니메이션&웹툰전공, 시각·영상 디자인전공), 공연예술학부(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전공), 스포츠과학과를 두고 경기드림캠퍼스에 미술조형디자인학부(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만화게임영상전공), 공연예술학부(연극영화전공), 국제매니지먼트 학부(경영전공, 문화예술콘텐츠전공)를 둔다.<개정 2006.6.5><개정 2007.5.16><개정 2008.9.1><개정 2009.6.1.><개정 2012.2.1.><개정 2012.2.1.><개정 2012.7.1.><개정 2014.3.1><개정 2014.3.31><개정 2015.5.27><개정 2016.2.25><개정 2016.5.27><개정 2017.5.10.><개정 2018.4.18.><개정 2019.4.23.><개정 2020.4.10.><개정 2021.4.23.><개정 2022.04.20.><개정 2023.4.21.>

② 본교에 특수대학원으로 문화예술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을 둔다.<조신설 2004.10.8><개정 2007.9.17><개정 2017.5.10>

제3조의2(학부(과) 및 정원) ①본교에 설치하는 학부(과)의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표개정 2004.4.19.><표개정 2004.7.16.><표개정 2004.10.8><표개정 2005.7.1><표개정 2006.6.5><표개정 2007.5.16.><표개정 2008.2.25><표개정 2008.9.1><표개정 2009.6.1><표개정 2010.6.3.><표개정 2011.6.1.><표개정 2012.2.1.><표개정 2012.7.1.><표개정 2014.3.1.><표개정 2014.3.31><표개정 2015.5.27><표개정 2016.2.25><표개정 2016.5.27.><표개정 2018.4.18.><표개정 2019.4.23.><표개정 2020.4.10.><표개정 2021.4.23.><표개정 2022.4.20.><표개정 2023.4.21.>

② 미술조형디자인(미술조형전공), 국제매니지먼트 학부(경영전공, 문화예술콘텐츠전공)는 정원외전담학과로 운영하며,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항신설 2023.4.21.>

제3조의3(입학정원의 예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3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조신설 2008.9.1>

제2장 수업연한

제4조(수업연한) ①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4>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항신설 2013.12.4>

③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항신설 2013.12.4>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학년, 학기)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로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①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②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

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5조의2(수업방법)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조신설 2012.7.1.><개정 2023.8.10>

제6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감축할 수 있다.

제7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9.1>

1. 하계 및 동계방학
 2. 개교기념일(5월 17일)
 3. 국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 ② 비상재해 기타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제1항 휴업일의 변경 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보충수업을 과할 수 있다.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전부(과)

제8조(입학시기) 신입학·재입학·편입학 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1선 이내로 한다.

제9조(입학자격)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② 미술조형디자인학부(미술조형전공)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항신설 2023.4.21.>
1. 입학연도에 만 30세 이상인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③ 국제매니지먼트학부(경영전공, 문화예술콘텐츠전공)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항신설 2023.4.21.>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순수외국인)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제10조(지원절차) ①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및 수험료는 과오납 수험료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고등학교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증명할 만한 서류
3. 기타 학교가 지정한 서류

제11조(지원자격 실효) 지원자가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예정기일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와 지원자격에 결격사항이 발견된 자는 그 지원이 실효 된다.

제12조(입학전형) 제1학년 입학지원자에 대한 전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그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2. 실기고사 성적
3. 면접고사 성적
4.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3조(입학허가) ① 입학의 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지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고, 기타 수업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4조(보증인) <삭제>

제15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대학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의 해당학년(2학기 편입학자는 해당학년 직 전학기)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 이어야 한다.

③ 편입학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학사편입은 제3학년 입학정원의 10%이내에 한하여 입학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재입학) ①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소정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한다.

② 학사 경고 또는 유급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경과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전부(과)) ① 학부(과)를 옮기는 것을 전부(과)라 한다.

② 전부(과)는 2학년 및 3학년, 4학년 학기 초에 한하며, 전부(과)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5.10>

③ 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허가 예정인원을 초과 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1.4.20>

④ 전부(과)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⑤ 전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휴학·복학·퇴학·제적

제18조(휴학) ① 휴학은 학기초로부터 4분의 1선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③ 휴학은 3회 이내에서 통산 3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2.3.>

④ 군입대 및 임신, 출산, 육아 휴학기간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4>

⑤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휴학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3.1.>

제19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4분의1선 이내로 한다.

제20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의 연서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초로부터 4분의1선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때
2.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때
3. 신고 없이 학기 초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선 이상 결석한 때
4. 타교에 입학한 때
5. 성적이 불량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6. 기타 학칙을 위반한 때
7. 본인 사망<신설 2021.2.3.>

제6장 등록·교과·수업·학점 및 졸업

제21조의2(등록) ① 본교의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서 완료된다.

제22조(교과과정) ① 본교의 교과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으로 하며 교양과정은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전공과정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09.01><개정 2012.02.27.><개정 2014.08.25.><개정 2019.02.28.>

② 교과과정의 편성 운영 및 학수구분별 이수학점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복수전공) ① 복수전공 이수승인을 받은 자로서 복수전공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는 복수전공으로 인정하며, 복수전공 이수신청 시기는 2학년으로 한다.<개정 2003.9.30>

②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3(부전공) ① 재학 중 전공이외의 특정전공의 교과목을 부전공 필수포함 21학점 이상 이수자에게는 부전공으로 인정한다.<신설 2003.9.30>

②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학점) 교과과정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기·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그 시간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학점의 인정) ① 각 과목별 학업성적이 D급 이상일 때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②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 이수한 때에는 그 전에 취득한 학점을 무효로 한다.

③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 기준학점은 16~17학점으로 하며, 학생이 한 학기에 이수 가능한 학점은 최소 9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19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개정 2008.9.1.><개정 2023.8.10>

② 승인 없이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영어트랙 학부 과정의 경우 학기당 취득 학점은 13~14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 ~ 1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24.00.00>

제26조(수료)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9.1>

1. 1학년 수료 32학점 이상(단, 영어트랙의 경우 1학년 수료 26학점 이상)<개정 2024.00.00>

2. 2학년 수료 65학점 이상(단, 영어트랙의 경우 2학년 수료 53학점 이상)<개정 2024.00.00>

3. 3학년 수료 97학점 이상(단, 영어트랙의 경우 3학년 수료 79학점 이상)<개정 2024.00.00>

제27조(졸업에 필요한 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고, 그에 따른 구성학점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9.1>

② 6학기 또는 7학기까지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는 조기 졸업 할 수 있다. 단,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유학생의 조기졸업은 평점평균 4.0이상인 자로 한다.<신설 2003.9.30.><개정 2008.9.1>

③ 영어트랙의 경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경우 110학점 이상으로 하고, 그에 따른 구성 학점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4.00.00>

제28조(편입학 학점인정) 편입학생이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별도로 심사하여 인정하고, 본교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28조의2(특별학점인정) ① 제1학년에 한하여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② 재학 중 총장의 허가를 받은 사회봉사활동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습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장실습수업은 국내현장실습수업과 해외 현장실습수업으로 구분하며, 본 현장실습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총 3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별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조신설 2008.9.1>

제29조(국내·외 대학간 교류학점) 총장은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교과이수 및 학점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교류학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기당 17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교류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제목변경 및 개정 2008.9.1>

제29조의2(군복무중 학점취득) ① 병역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학생은 본교에서 제공하는 정규학기 온라인 수업을 수강신청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 학기당 3학점, 연 6학점 이내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군 복무 중 학점취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08.9.1>

제29조의3(예비대학생의 학점인정) 입학 전형에 합격한 예비 신·편입생은 입학 전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 대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예비대학 교육과정의 개설과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08.9.1>

제30조(수업시간표) 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제31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입시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말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32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시험 또는 평소의 성적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표시하고, D이상은 급제, F는 낙제로 한다.

등 급	실 점	평 점
A+	95 - 100	4.50
A	90 - 94	4.00
B+	85 - 89	3.50
B	80 - 84	3.00
C+	75 - 79	2.50
C	70 - 74	2.00
D+	65 - 69	1.50
D	60 - 64	1.00
F	0 - 59	0.00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 및 협동생활에 대하여는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성적을 평가한다.

③ 낙제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때에는 반드시 재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 과목인 때에는 타 교과목으로 재 이수할 수 있다.

제33조(출석) 한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 다만, 질병, 학기 중 취업학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11.17>

제34조(성적불량 학생에 대한 조치) 학기말의 평균평점이 D(1.0)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를 하고,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제35조(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기간 중복 또는 공적업무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당해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결정하여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우리 대학교 학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4.20>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 승인 없이 수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개정 2021.4.20>

③ 전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이고, 포기과목이나 실격과목 없이 16학점 이상(영어트랙의 경우 13학점 이상) 취득한자는 최대 신청학점을 19학점(영어트랙의 경우는 16학점까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 학점 수 이하로 제한한다.<개정 2008.9.1>
<개정 2024.00.00>

제37조(졸업) ① 이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7조의 규정을 충족한 자로서 각각 전공부문의 졸업연주, 졸업작품,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단,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증에 제1전공 및 제2, 3전공을 병기하여 수여한다.<개정 2003.9.30><표개정 2004.7.16><표개정 2004.10.8><표개정 2005.7.1><표개정 2006.6.5><표개정 2008.2.25><표개정 2008.9.1><표개정 2009.6.1.><서식개정 2009.6.1><표개정 2012.2.1><표개정 2015.5.27><표개정 2016.5.27.><표개정 2018.4.18.><표개정 2019.04.23.><표개정 2020.04.10.><표개정 2021.2.3.><표개정 2021.4.23.><표개정 2022.04.20.><표개정 2023.4.21.>

② 졸업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그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③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신설 2003.9.30>

제37조의2(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수여) ① 국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교류협정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국외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우리대학교와 해당 외국대학교의 공동명의로 학사학위를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조신설 2008.9.1>

제37조의3(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총장은 2년 범위내에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04.23.>

② <삭제 2019.04.23.>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4.3.1.><개정 2019.04.23.>

제38조(졸업연주·졸업작품·졸업논문) ① 졸업연주·졸업작품·졸업논문의 발표시기는 졸업 예정학기로 한다.

② 졸업연주 또는 졸업작품, 졸업논문은 당해 학부(과) 2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료 후 2회에 한하여 다시 발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졸업의 취소) 제24조 제2항, 제3항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 할 수 있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40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종합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빈번한 자
4. 성폭력(폭행, 추행, 희롱 등)을 행한 자
5.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42조(학사징계) ①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균 평점이 D(1.0)에 미달한 자 또는 3과목이상 F인 자에 대하여 학사 경고를 한다. **영어트랙 학부 과정의 경우 2과목이상 F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개정 2024.00.00>**

②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거나 재학 중 통산하여 4회를 받은 자는 학사 제적된다.

제8장 학생활동

제43조(총학생회) ① 학생은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단체 등의 지도) 학생단체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5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등 학교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위와 교육목표가 정하는 바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제46조(학생집회의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 외 2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4. 외부인사의 교내 초청

제47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고자 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8조(학생생활지도) 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9장 납입금

제49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금은 매 학년도말 이전에 연액으로 정하여 1, 2학기 등록기간 전에 나누어 고지한다.

제50조(휴학 및 복학자의 납입금) 등록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에게는 당해 휴학기간의 납입금을 면제하되, 복학 시에는 복학 당해 학기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 당시의 납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8.9.1>

제51조(납입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와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반환한다.

② 전항의 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표개정 2004.10.8.><표개정 2011.02.11.><표개정 2021.2.3.>

사 유 발 생 시 기	반 환 금 액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까지	납입금 전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10장 장학금

제52조(장학금) ① 학업성적,品行,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외국인학생,시간제등록생,평가인정학습과정(학점은행제)등록생, 명예학생(청강생)<개정 2016.5.27.><개정 2023.06.13>

제53조(위탁생) <삭제>

제54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을 거쳐 입학정원의 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으로서 각 학부(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제55조(외국인 특별생의 편입)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학력을 검정한 후 정규학생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제목변경 및 개정 2008.9.1>

제56조(외교관 자녀) <삭제>

제56조의2(시간제등록생, 평가인정학습과정등록생) 일반사회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6.5.27>

제56조의3(선발시기) 선발시기는 매학기 초 수업일수 4분의1선 이내로 한다.

제56조의4(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하며,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재적대학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의5(선발인원 및 방법) ①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 모집단위별 정규학생의 입학정원 내로 한다.<개정 2009.1.6><개정 2009.12.01><개정 2011.02.11><개정 2011.08.05>

②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이나 졸업증명서,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한다.<신설 2009.1.6><개정 2009.12.1>

제56조의6(등록 및 수강신청) ① 시간제등록생은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신청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 이내로 하며, 신청교과목은 당해 학기 전일제 학생 개설 교과목 중에서 한다. 단, 여러 대학에 시간제 등록을 한 경우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1.6>

제56조의7(학점인정) 본교 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인정된 취득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단, 본교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학점인정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8(학점취득) ① 학위수여를 위하여 필요한 취득학점은 총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최저 8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위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 는 본교 전일제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부(과)별 최저 이수 요구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56조의9(학위수여) ① 본 학칙 제28조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초 4주 이내에 학사학위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신청서를 제출한 시간제등록생에게는 졸업사정을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증서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56조의10(수업) ① 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은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수업운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온라인 수업비율은 평생교육진흥원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에 준하며 교육과정은 각 학부의 교과과정을 따른다.<조신설 2009.1.6><개정 2009.12.01.><개정 2016.5.27>

③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 과정 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5.27.>

④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5.27.>

제56조의11(출석 및 수업관리)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출석 및 수업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조신설 2016.5.27.>

1.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교수 및 강사는 출석부에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평생교육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의12(성적평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성적평가는 학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세부 운영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한다.<조신설 2016.5.27.>

제56조의13(학적관리 등) ①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학적관리 자료를 영구 보존한다.

②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 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 까지 학적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③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도록 한다.<조신설 2016.5.27.>

제56조의14(상담창구의 운영)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운영한다.<조신설 2016.5.27.>

제56조의15((명예학생(청강생) 선발 및 수료증 수여)) ①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명예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수료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선발 및 수료 절차 등 학사 운영에 관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23.6.13.>

제12장 공개강좌

제57조(공개강좌) ① 본교는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보급하고, 기능을 연마케 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시기,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장 직제 및 재임용<재임용추가 2005.7.1>

제58조(직제) 본교의 직제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의2(재임용) 본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5.7.1>

제14장 교수회 및 각종위원회

제59조(교수회) ① 본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배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3.12.4>

③ 교수회의는 통상으로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직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0조(교수회의 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학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사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0조의2(대학평의위원회) ①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 법인정관 제19조의3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교무위원회) ① 본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처장, 실장, 원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제반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입학·수료·졸업 등 학사운영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수회의 부의 안건 중 중요한 사항
4. 부설기관의 설치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3.1>

제62조(각종위원회) ① 본교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의2(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신설 2009.6.1>

제15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제63조(부속기관) ① 부속기관의 직제는 제58조에 따른다.<개정 2003.9.30.><개정 2006.6.5.><개정 2007.3.1.><개정 2011.02.11.><개정 2012.06.11.><개정 2014.12.01>

② 전항 부속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3조의2(학교기업) ① 본교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예원예술대학교 학교기업(이하“학교기업”이라 한다)을 두며,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과)는 [별표 3]과 같다.<표개정 2009.1.6><표개정 2009.6.1>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총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학기당 인정 학점은 15학점 이내로 한다. 이 외의 사항은 본교 학생현장실습 규정에 따른다.

③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해서는 예원예술대학교 장학금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상금 지급기준은 학교기업 세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04.7.2>

제64조(부설기관) ① 부설기관의 직제는 제58조에 따른다.<신설 2011.2.11.><개정 2014.12.01>

②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계약학과<제정 2008.2.25>

제64조의2(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전공)(이하“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4조의3(정원) ①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1-1]과 같다.<표개정 2008.9.01.><표개정 2009.1.6.><표개정 2009.12.1.><표개정 2011.2.11.><표개정 2012.12.21.><표개정 2014.3.1>

② 제64조의4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2 당해 학년 총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의4(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 자는 본교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

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64조의5(교과목 이수 인정) 계약학과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4조의6(납입금) 제64조의4 제1항 1호 및 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5.27.>

제64조의7(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와 학기 및 수업일수는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다.

제64조의8(운영기간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가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전공)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교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7장 장애학생의 지원 등<제정 2011.04.01>

제64조의9(장애학생의 지원) ①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본교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의 결정 등에 대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장 학칙개정<장 변경 2008.2.25, 2011.4.01>

제65조(학칙개정절차) 학칙의 개정은 개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입안하여 기획조정처에 제출하고 기획조정처는 그 내용을 검토 후 정리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7일간 공고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본 대학교의 규정심의위원회 심의와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공포한다.<개정 2007.3.1><개정 2014.3.31><개정 2014.12.1>

제66조(개정 학칙의 보고) <조 폐지 2014.3.31>

부 칙(2000. 3. 1 설립학칙)

1.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6 교학11502-288)

1.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① 2000학년도 및 2001학년도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과를 적용 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00학년도 및 2001학년도)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과에서 변경된 통합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전공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종 전 재 적 학 과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 공
조 형 미 술 학 과	미 술 학 부	한 서 아 동 국 양 미 화 화 술
산 업 공 예 디 자 인 학 과	디 자 인 학 부	시 각 정 보 디 자 인
커 뮤 니 케 이 션 디 자 인 학 과		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세 라 믹 아 트 디 자 인
만 화 예 술 학 과	만 화 영 상 학 부	만 화 영 상
음 악 학 과	음 악 학 부	피 성 작 관 아 노 악 곡 악 (클래식기타, 색소폰, 타악포함)
스 포 츠 레 저 학 과	스 포 츠 레 저 학 부	스 포 츠 레 저
한 국 무 용 학 과	공 연 예 술 학 부	무 용
코 미 디 연 기 학 과		코 미 디
예 술 경 영 학 과	정 보 · 경 영 학 부	예 전 자 술 상 경 거 영 래
문 화 재 관 리 학 과	문 화 재 학 부	문 화 재 보 존

부 칙(2002. 9. 16 교무11502-621)

1.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① 2000학년도, 2001학년도, 2002학년도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부(과)를 적용 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00학년도, 2001학년도, 2002학년도)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부(과)에서 변경된 통합 학부(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전공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 부	전 공	학 부(과)	전 공
미 술 학 부	한 서 아 동 국 양 미 화 화 술	미 술 · 디 자 인 학 부	한 서 아 동 국 양 미 화 화 술
디 자 인 학 부	시 각 정 보 디 자 인 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세 라 믹 아 트 디 자 인		시 각 정 보 디 자 인 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문 화 상 품 디 자 인
만 화 영 상 학 부	만 화 영 상	만 화 · 게 임 영 상 학 부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음 악 학 부	피 성 작 관 아 노 악 곡 악 (클래식기타, 색소폰, 타악포함)	음 악 학 부	피 성 작 관 아 노 악 곡 악 (클래식기타, 색소폰, 타악포함)
공 연 예 술 학 부	무 코 미 용 디	공 연 예 술 학 부	무 코 미 용 디
정 보 · 경 영 학 부	예 전 자 술 상 경 거 영 래	정 보 · 경 영 학 부	예 전 자 술 상 경 거 영 래
스 포 츠 레 저 학 부	스 포 츠 레 저	스 포 츠 레 저 학 과	
문 화 재 학 부	문 화 재 보 존	문 화 재 학 과	

부 칙(2002. 10. 19 교무11502-703)

1.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25 교무11502-309)

-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① 2003학년도 입학자는 종전의 재적학부(과) 및 전공을 적용받는다.
 ② 2000학년도, 2001학년도 입학자 중 한국무용학과 재적자는 무용학과 재적자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재적자는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재적자로, 만화예술학과 재적자는 만화영상학과 재적자로 본다.
 ③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휴학 후 복학할 때 학부(과)통합, 전공명칭 변경으로 당해 학부(과)또는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 통합된 학부(과) 또는 변경된 전공으로 복학한다.
 ④ 시각정보디자인, 전자상거래전공의 휴학생 중 해당 전공에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전공인 멀티미디어 디자인전공에 복학할 수 있으며, 전공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 부	전 공	학 부(과)	전 공
미 술 · 디 자 인 학 부	한 국 양 화 서 각 정 보 디 자 인 시 각 정 보 디 자 인 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문 화 상 품 디 자	미 술 · 디 자 인 학 부	회 화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문 화 상 품 디 자 인
만 화 · 게 임 영 상 학 부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만 화 · 게 임 영 학 부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멀 티 미 디 어 디 자 인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 부	전 공	학 부(과)	전 공
음 악 학 부	피 성 관 아 노 악 (클래식기타, 현 색소폰, 타악포함)	음 악 학 부	피 성 관 아 유 지 노 악 (색소폰, 유포늄, 타악포함) 클 래 식 기 타
공 연 예 술 학 부	무 코 미 용 디	공 연 예 술 학 부	무 코 실 용 미 음 용 디 악
정 보 · 경 영 학 부	예 술 경 영 전 자 상 거 래	예 술 경 영 · 문 화 재 부 학	예 술 경 영
문 화 재 학 과			문 화 재 보 존
스 포 츠 레 저 학 과		스 포 츠 레 저 학 과	

부 칙(2003. 9. 30 교무11502- 491)

-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는 2003년 7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7. 2 교무353)

- 본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9 교무245, 2004. 7. 16 교무383)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부 통합, 변경 및 신설)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를 통합, 변경 및 신설한다.
- 미술·디자인학부와 음악학부를 통합한 예술·디자인학부를 신설한다.
 - 공연예술학부를 방송공연학부로 변경한다.
 - 스포츠레저학과를 스포츠레저학부로 한다.

제3조(전공 폐지, 신설, 소속변경 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폐지, 신설, 소속변경 및 학부에 전공을 두고 시행한다.

1. 예술·디자인학부에 회화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무용전공, 음악전공을 둔다.
2. 만화·게임영상학부에 만화애니메이션전공, 게임애니메이션전공을 둔다.
3. 방송공연학부에 코미디전공, 실용음악전공, 방송디지털콘텐츠전공을 둔다.
4. 스포츠레저학부에 레저스포츠전공, 전통무예전공을 둔다.
5.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성악유지컬전공, 현악전공, 관악전공, 클래식기타전공은 예술·디자인학부 음악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6.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을 예술·디자인학부 무용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7. 미술·디자인학부 문화상품디자인전공을 폐지한다.
8. 만화·게임영상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을 폐지한다.

제4조(학부 및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미술·디자인학부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미술·디자인학부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디자인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② 미술·디자인학부 문화상품디자인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미술·디자인학부 문화상품디자인전공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디자인학부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음악학부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음악학부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디자인학부 음악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④ 만화·게임영상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만화·게임영상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화·게임영상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게임애니메이션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⑤ 공연예술학부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공연예술학부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공연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⑥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디자인학부 무용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⑦ 스포츠레저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스포츠레저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포츠레저학부 레저스포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명) 위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10. 8 교무542)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내용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당시 2004학년도 예술경영·문화재학부 모집단위가 예술경영학과, 문화재보존학과로 분리·신설됨에 따라 예술경영·문화재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예술경영학과, 문화재보존학과에 각각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학과배정을 받지 않은 복학 또는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예술경영학과와 문화재보존학과 중에서 학생의 선택에 의해 학과를 배정한다.

부 칙(2005. 7. 1 교무35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학부변경) 내지 4조(학부 및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영상그래픽 전공신설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 변경) 예술·디자인학부를 미술·디자인학부로, 방송공연학부를 공연·음악학부로 변경한다.

제3조(전공 폐지, 신설, 소속변경 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폐지, 신설, 소속변경 및 학부에 전공을 두고 시행한다.

1. 미술·디자인학부에 회화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을 둔다.
2. 만화·게임영상학부에 영상그래픽전공을 신설한다.
3. 공연·음악학부에 코미디전공, 실용음악전공, 음악전공을 둔다.
4. 예술·디자인학부 무용전공을 스포츠레저학부 무용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5. 예술·디자인학부 음악전공을 공연·음악학부 음악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6. 방송공연학부 방송디지털콘텐츠전공을 폐지한다.

7.스포츠레저학부 전통무예전공을 폐지한다.

제4조(학부 및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예술·디자인학부 재학생이 세부전공 선택 전 학적변동으로 예술·디자인학부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술·디자인학부, 공연·음악학부 또는 스포츠레저학부 재학생으로 본다.

② 방송공연학부 재학생이 학적변동으로 방송공연학부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연·음악학부 재학생으로 본다.

③ 방송공연학부 재학생이 세부전공 선택 전 학적변동으로 방송공연학부 방송디지털콘텐츠전공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화·게임영상학부 영상그래픽전공 재학생으로 본다.

④ 스포츠레저학부 재학생이 세부전공 선택 전 학적변동으로 스포츠레저학부 전통무예전공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포츠레저학부 레저스포츠전공 재학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명)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6. 5 교무29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과) 변경 및 폐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과)를 변경 및 폐지한다.

1. 스포츠레저학부를 스포츠레저복지학부로 변경한다.
2. 예술경영학과를 문화관광경영학과로 변경한다.
3. 문화재보존학과를 폐지한다.

제3조(전공 폐지, 신설, 소속변경 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폐지, 신설, 소속변경 및 학부에 전공을 두고 시행한다.

1. 공연·음악학부 코미디전공을 코미디(연극영화)전공으로 변경한다.
2. 공연·음악학부 음악전공을 폐지한다.
3. 공연·음악학부에 피아노전공을 신설한다.
4. 스포츠레저학부 레저스포츠전공을 스포츠레저복지학부 스포츠레저복지전공으로 변경한다.

제4조(학부(과) 변경·폐지 및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조의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보존학과 재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과를 배정한다.

제5조(학위명)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3. 1 교무1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16 교무28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과) 변경 및 신설)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과)를 변경 및 폐지한다.

1. 스포츠레저학부를 스포츠복지학부로 변경한다.
2. 문화·관광학부를 신설한다.

제3조(전공 변경 및 신설)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시행한다.

1. 미술·디자인학부 회화전공을 한지조형미술전공으로 변경한다.
2. 공연·음악학부 피아노전공을 음악·음향전공으로 변경한다.
3. 스포츠레저복지학부 무용전공을 스포츠복지학부 무용복지전공으로 변경한다.
4. 문화관광경영학과를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경영전공으로 변경한다.

5. 스포츠복지학부에 사회복지전공을 신설한다.

6. 문화·관광학부에 문화재전공과 한국어·IT전공을 신설한다.

제4조(학부(과) 및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조의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보존학과 재적생이 휴학 또는 제적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문화·관광학부 문화재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명)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10. 2 교학7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5 교학18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부칙 제2조(전공폐지·명칭변경 및 소속변경 인정)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폐지·명칭변경 및 소속변경 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 폐지,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미술·디자인학부 한지조형미술전공을 한지·조형디자인전공으로 변경한다.

2. 만화·게임영상학부 영상그래픽전공을 폐지한다.

3. 공연·음악학부 코미디(연극영화)전공을 연극영화·코미디전공으로 변경하고 음악·음향전공을 음악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4. 문화·관광학부의 문화재전공을 학부에서 분리하여 문화재학과를 신설한다.

제4조(전공 폐지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조의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만화·게임영상학부 재적생이 세부전공 선택 전 학적변동으로 만화게임영상학부 영상그래픽전공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화게임영상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게임애니메이션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명)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 및 전공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문화재전공 학위종별 [별표1] 변경에 따른 학위수여 종별은 2008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9. 1 교학69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와 제22조(교과과정)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졸업학점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27조의 졸업이수학점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이수학점은 다음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학점을 졸업이수학점으로 한다.

1. 2008학년도까지의 학기당 졸업이수학점 기준 : 이수학기 * 18학점

2. 2008학년도 이후 학기당 졸업이수학점 기준 : 이수학기 * 16학점

부 칙(2009. 1. 6 교학9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 교학34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과) 통합 및 신설)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문화·관광학부와 문화재학과를 통합하여 문화재·관광학부를 신설한다.

제3조(전공 폐지·명칭변경 및 소속변경 인정)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 폐지,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공연·음악학부 음악전공을 폐지하고 유지컬전공을 신설한다.
2. 한국어·IT전공을 한국어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3. 문화재·관광학부에 문화관광경영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어전공을 둔다.

제4조(전공 폐지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조의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변경된 학부(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공연·음악학부 재적생이 세부전공 선택 전 학적변동으로 공연·음악학부 음악전공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연음악학부 실용음악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명)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 및 전공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2. 1 교학8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3(정원)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6. 3 교학37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신설 및 명칭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한다.

1. 공연·음악학부에 음악전공을 신설한다.
2. 문화재·관광학부의 문화재전공을 문화재보존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2011. 2. 11 교학8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 신설 및 폐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학과를 신설, 폐지한다.

1. 스포츠무도복지학과를 폐지한다.
2. 스포츠학과를 신설한다.

제3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스포츠무도복지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스포츠무도복지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의 스포츠복지학부 스포츠레저복지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명)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스포츠무도복지학과로 제 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4. 1 교학 27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학생 지원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둔다.

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2.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본교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의 결정 등에 대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11. 6. 1 교학 37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폐지, 전공·학과 명칭 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 폐지, 전공·학과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문화재·관광학부 한국어전공을 폐지한다.
2. 한지조형·디자인전공을 한지조형디자인전공으로, 스포츠레저복지전공을 스포츠복지전공으로, 무용복지전공을 무용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3. 문화재·관광학부의 문화재전공을 문화재·보존학과로, 문화관광경영전공을 글로벌호텔관광경영학과로 각각

변경한다.

제3조(전공 폐지, 전공·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조의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변경된 학부(학과) 및 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학위명)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부 및 전공으로 제 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변경) 전(2011학년도)			개정(변경) 후(2012학년도)		
학 부	전 공	정원	학 부 (과)	전 공	정원
미 술 · 디 자 인	한 지 · 조 형 디 자 인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52	미 술 · 디 자 인	한 지 조 형 디 자 인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49
만 화 · 게 임 영 상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53	만 화 · 게 임 영 상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50
공 연 · 음 악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실 용 지 음 악 컬 악	82	공 연 · 음 악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실 용 지 음 악 컬 악	84
스 포 츠 복 지	스 포 츠 레 저 복 지 무 용 복 지	34	스 포 츠 복 지	스 포 츠 복 지 무 용 지	31
문 화 재 · 관 광	문 화 관 광 경 영 재 문 화 국 어	28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15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20
5개 학부 13개 전공		249	4개 학부 10개 전공 2개학과		249

부 칙(2011. 8. 5 교학 5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인원 및 방법) 시간제 등록생 등록인원은 모집단위별 정규학생의 입학정원 내로 한다.

부 칙(2012. 2. 27 교학 17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02월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64조의3(정원)은 2012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약학과 폐지) 계약학과(스포츠학과)를 폐지한다.

제3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스포츠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스포츠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의 스포츠복지학부 스포츠레저복지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명)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스포츠학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6. 25 교학 5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조의2(학부(과) 및 정원)은 201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과)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부(과) 전공을 적용 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부(과) 전공에서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종전 재적 학부(과)		변경된 재적학과
학 부 (과)	전 공	
미 술 · 디 자 인 학 부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만 화 · 게 임 영 상 학 부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공 연 · 음 악 학 부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학 과
	실 용 음 악	실 용 음 악 학 과
	뮤 지 컬	뮤 지 컬 학 과
	음 악	음 악 학 과
스 포 츠 복 지 학 부	스 포 츠 복 지	생 활 체 육 학 과
	무 용	무 용 학 과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부 칙(2012. 12. 21. 교학 96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12월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64조의3(정원)은 201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약학과 폐지) 계약학과(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를 폐지한다.

제3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의 만화·게임영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명)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2. 4. 교학 95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12월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18조 4항은 2013년8월26일부터, 학칙 제59조 2항은 201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3. 1 교학 14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주캠퍼스 개교에 따른 경과조치) 양주캠퍼스 이전학과의 개교 이전 미술·디자인학부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만화·게임영상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게임애니메이션전공, 공연·음악학부 연극영화·코미디전공, 음악전공의 재적학생은 양주캠퍼스 소속 재적학생으로 본다.

제3조(계약학과 폐지) 계약학과(스포츠격기예이전시학과)를 폐지한다.

제4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스포츠격기예이전시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스포츠격기예이전시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의 생활체육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5조(학위명)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스포츠격기예이전시학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3. 31 교학 26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4월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8. 25 교학 6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28 기획 30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7 교학 58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신설) 뷰티패션디자인학과를 신설한다.

제3조(학과 폐지·학과계열 및 명칭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 폐지, 학과계열 및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미디어예술학과를 폐지한다.
2. 인문사회계열인 문화재보존학과를 예체능계열인 문화재보존예술학과로 계열 및 학과명칭을 변경한다.
3. 인문사회계열인 호텔관광경영학과를 예체능계열인 문화예술관광콘텐츠학과로 계열 및 학과명칭을 변경한다.
4. 연극영화·코미디학과를 연극영화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4조(학과 계열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전조의 변경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변경된 계열 및 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미디어예술학과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미디어예술학과에 재적(복학, 재입학, 유급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의 연극영화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6조(학위명)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로 제 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2. 25 교무 10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변경) 문화재보존예술학과와 문화예술관광콘텐츠학과는 인문사회계열로 계열을 변경한다.

부 칙(2016. 5. 27 교무 35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 문화재보존예술학과, 문화예술관광콘텐츠학과를 폐지한다.

제3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부 칙(2016. 11. 17 교무 66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5. 10 교학 26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편제) 및 제3조의 2(학부(과) 및 정원)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 무용학과는 폐지한다.

제3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부 칙(2018. 4. 18 교학 23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조의2(학부(과) 및 정원)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과를 적용 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과에서 변경된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과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공
한 지 공 간 조 형 디 자 인 학 과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한 지 공 간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조 형 학 과		미 술 조 형 전 공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과		뷰 티 패 션 디 자 인 전 공
금 속 조 형 디 자 인 학 과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전 공
애 니 메 이 션 학 과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시 각 디 자 인 학 과		시 각 디 자 인 전 공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실 용 음 악 학 과		실 용 음 악 전 공
공 연 예 술 뮤 지 컬 학 과	공 연 예 술 학 부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연 극 영 화 학 과		연 극 영 화 전 공
음 악 학 과		음 악 전 공
생 활 체 육 학 과	생 활 체 육 학 과	
경 호 무 도 학 과	경 호 무 도 학 과	

부 칙(2019. 2. 28 교학 4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23 교무 28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23 교무 3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조의2(학부(과) 및 정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미술조형디자인학부의 뷰티패션디자인전공을 뷰티디자인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2. 미술조형디자인학부의 한지공간조형디자인전공과 미술조형전공을 통합하여 융합조형디자인전공을 신설한다.
3. 생활체육학과와 경호무도학과를 통합하여 스포츠경호무도학과를 신설한다.

제3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과를 적용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과에서 변경된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공	학부(과)	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한지공간조형디자인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미 술 조 형 전 공		뷰 티 디 자 인 전 공
	뷰 티 패 션 디 자 인 전 공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전 공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전 공		애 니 메 이 션 전 공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시 각 디 자 인 전 공
	시 각 디 자 인 전 공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실 용 음 악 전 공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공 연 예 술 학 부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연 극 영 화 전 공
	연 극 영 화 전 공		음 악 전 공
	음 악 전 공		
생 활 체 육 학 과		스포츠경호무도학과	
경 호 무 도 학 과			

부 칙(2020. 04. 10. 교학 19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미술조형디자인학부의 금속조형디자인전공을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3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과를 적용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과에서 변경된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공	학부(과)	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한지공간조형디자인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미 술 조 형 전 공		뷰 티 디 자 인 전 공
	뷰티패션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금속조형디자인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시 각 디 자 인 전 공		시 각 디 자 인 전 공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공연예술학부	실 용 음 악 전 공	공연예술학부	실 용 음 악 전 공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연 극 영 화 전 공		연 극 영 화 전 공
	음 악 전 공		음 악 전 공
생활체육학과		스포츠경호무도학과	
경호무도학과			

부 칙(2021. 2.3. 교무 125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7조(졸업) (별지 제1호 서식)은 2020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4. 20. 교무 37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5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4. 23. 학생 25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디지털콘텐츠학부의 애니메이션전공을 애니메이션&웹툰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2. 공연예술학부의 공연예술뮤지컬전공을 공연예술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3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과를 적용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과에서 변경된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공	학부(과)	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웹툰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공연예술전공
	연극영화전공		연극영화전공
	음악전공		음악전공
스포츠경호무도학과		스포츠경호무도학과	

- 부 칙(2022.04.20. 입학 187)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1. 디지털콘텐츠학부의 시각디자인전공을 시각·영상 디자인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2. 스포츠경호무도학과명을 스포츠과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 제3조(학과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재적학과를 적용받는다. 다만, 휴학 및 복학생(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아래와 같이 종전 재적학과에서 변경된 학부(과)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 제4조(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공	학부(과)	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웹툰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시각·영상 디자인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공연예술전공
	연극영화전공		연극영화전공
	음악전공		음악전공
스포츠경호무도학과		스포츠과학과	

부 칙(2023.4.21. 입학 19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 음악전공은 폐지한다.

종전 재적학부(과) 및 전공		변경된 재적학부(과) 및 전공	
학부(과)	전공	학부(과)	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뷰티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미술조형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웹툰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시각·영상디자인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만화게임영상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공연예술전공
	연극영화전공		연극영화전공
	음악전공		음악전공
스포츠경호무도학과		스포츠학과	
		국제매니지먼트학부	경영전공
			문화예술콘텐츠전공

부 칙(2023.6.13 평생 9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10. 교무 6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24학년도 입학정원

전북희망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22	
	뷰티디자인전공	15	
	미술조형전공	-	정원외 성인학습자전담학과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웹툰전공	40	
	시각·영상디자인전공	20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10	
	공연예술전공	10	
스포츠과학과		25	
교양학부		-	
합계		142	

경기드림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술조형디자인학부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27	
디지털콘텐츠학부	만화게임영상전공	40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22	
국제매니지먼트학부	경영전공	-	정원외 외국인전담학과
	문화예술콘텐츠전공		
합계		89	

2023학년도 입학정원

전북희망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합조형디자인전공	20	
	뷰티디자인전공	19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웹툰전공	33	
	시각·영상디자인전공	20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전공	15	
	공연예술전공	15	
스포츠과학과		20	
교양학부		-	
합계		142	

경기드림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술조형디자인학부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27	
디지털콘텐츠학부	만화게임영상전공	30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24	
	음악전공	8	
합계		89	

2022학년도 입학정원

전북희망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응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25	
	뷰 티 디 자 인 전 공	20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 웹 툴 전 공	34	
	시 각 디 자 인 전 공	27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24	
	공 연 예 술 전 공	27	
스 포 츠 경 호 무 도 학 과		29	
교 양 학 부		-	
합	계	186	

경기드림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전 공	26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29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24	
	음 악 전 공	10	
합	계	89	

2021학년도 입학정원

전북희망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융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25	
	뷰 티 디 자 인 전 공	20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34	
	시 각 디 자 인 전 공	27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24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27	
스 포 츠 경 호 무 도 학 과		29	
교 양 학 부		-	
합	계	186	

경기드림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전 공	26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29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24	
	음 악 전 공	10	
합	계	89	

2020학년도 입학정원

전북희망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융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30	
	뷰 티 디 자 인 전 공	29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34	
	시 각 디 자 인 전 공	29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24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29	
스 포 츠 경 호 무 도 학 과		32	
교 양 학 부		-	
합	계	207	

경기드림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전 공	28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30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26	
	음 악 전 공	15	
합	계	99	

2019학년도 입학정원

전북희망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한 지 공 간 조 형 디 자 인 전 공	20	
	미 술 조 형 전 공	15	
	뷰 티 패 션 디 자 인 전 공	25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28	
	시 각 디 자 인 전 공	26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24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25	
생 활 체 육 학 과		19	
경 호 무 도 학 과		25	
교 양 학 부		-	
합	계	207	

경기드림캠퍼스

학부(과)	전공	정원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전 공	28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27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24	
	음 악 전 공	20	
합	계	99	

2018학년도 입학정원

전북희망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한 지 공 간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0	
실 용 음 악 학 과	24	
공 연 예 술 뮤 지 컬 학 과	25	
생 활 체 육 학 과	21	
미 술 조 형 학 과	15	
시 각 디 자 인 학 과	25	
애 니 메 이 션 학 과	27	
경 호 무 도 학 과	25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과	25	
교 양 학 부	-	
합	207	

경기드림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금 속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5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25	
연 극 영 화 학 과	24	
음 악 학 과	25	
합	99	

2017학년도 입학정원

전북희망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0	
실	용 음 악 학 과	22	
유	지 컬 학 과	25	
생	활 체 육 학 과	23	
무	용 학 과	15	
미	술 조 형 학 과	17	
시	각 디 자 인 학 과	26	
애	니 메 이 션 학 과	27	
경	호 무 도 학 과	25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과	25	
교	양 학 부	-	
합	계	225	

경기드림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25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25	
연	극 영 화 학 과	24	
음	악 학 과	25	
합	계	99	

2016학년도 입학정원

전북희망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0	
실	용 음 악 학 과	20	
유	지 컬 학 과	22	
생	활 체 육 학 과	20	
무	용 학 과	15	
문	화 재 보 존 예 술 학 과	15	
문	화 예 술 관 광 콘 텐 츠 학 과	15	
미	술 조 형 학 과	15	
시	각 디 자 인 학 과	22	
애	니 메 이 션 학 과	20	
경	호 무 도 학 과	21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과	20	
교	양 학 부	-	
합	계	225	

경기드림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25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25	
연	극 영 화 학 과	24	
음	악 학 과	25	
합	계	99	

2015학년도 입학정원

임실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0	
실	용 음 악 학 과	20	
유	지 컬 학 과	22	
생	활 체 육 학 과	23	
무	용 학 과	15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15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15	
미	술 조 형 학 과	15	
시	각 디 자 인 학 과	20	
애	니 메 이 션 학 과	20	
경	호 무 도 학 과	20	
미	디 어 예 술 학 과	20	
교	양 학 부	-	
합 계		225	

양주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26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33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학 과	15	
음	악 학 과	25	
합 계		99	

2014학년도 입학정원

임실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7	
실	용 음 악 학 과	20	
유	지 컬 학 과	25	
생	활 체 육 학 과	26	
무	용 학 과	16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16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20	
교	양 학 부	-	
합 계		150	

양주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26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41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학 과	15	
음	악 학 과	17	
합 계		99	

단, 양주캠퍼스 2014년 편제정원은 436명으로 한다.

2013학년도 입학정원

임실캠퍼스

학 과	정 원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27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26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41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학 과	15	
실 용 음 악 학 과	20	
뮤 지 켈 학 과	25	
음 악 학 과	17	
생 활 체 육 학 과	26	
무 용 학 과	16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16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20	
교 양 학 부	-	
합 계	249	

2012학년도 입학정원

임실캠퍼스

학 부 (과)	전 공	정 원
미 술 · 디 자 인 학 부	한 지 조 형 디 자 인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49
만 화 · 게 임 영 상 학 부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50
공 연 · 음 악 학 부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실 용 음 악 / 뮤 지 켈 / 음 악	84
스 포 츠 복 지 학 부	스 포 츠 복 지 용	31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15
글로벌호텔관광경영학과		20
합 계		249

[별표 1-1]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

2014학년도 입학정원

모 집 단 위	정 원	학 위 종 별	설치유형	입학학년
스포츠격기예이전시학과	24	체 육 학 사	채 용 조 건 형	학과폐지

2013학년도 입학정원

모 집 단 위	정 원	학 위 종 별	설치유형	입학학년
스포츠격기예이전시학과	24	체 육 학 사	채 용 조 건 형	1학년
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	15	미 술 학 사	채 용 조 건 형	학과폐지
	15	미 술 학 사	재 교 육 형	

2012학년도 입학정원

모 집 단 위	정 원	학 위 종 별	설치유형	입학학년
만화·게임영상콘텐츠학과	15	미 술 학 사	채 용 조 건 형	3학년
	15	미 술 학 사	재 교 육 형	1,3학년

학사학위 종별표

[2024학년도]

학부(과)	전공	학위수여	비고
미술조형디자인학부	융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뷰 티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미 술 조 형 전 공	미 술 학 사	
공연예술학부	실 용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공 연 예 술 전 공	공 연 예 술 학 사	
	연 극 영 화 전 공	연 극 영 화 학 사	
디지털콘텐츠학부	애 니 메 이 션 & 웹 톤 전 공	미 술 학 사	
	시 각 · 영 상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디 자 인 학 사	
스포츠과학과		체 육 학 사	
국제매니지먼트학부	경 영 전 공	문 학 학 사	
	문 화 예 술 콘 텐 츠 전 공	문 학 학 사	

[2023학년도]

학부(과)	전공	학위수여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융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뷰 티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공 연 예 술 전 공	공 연 예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 웹 톤 전 공	미 술 학 사	
	시 각 · 영 상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연 극 영 화 학 사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스 포 츠 과 학 과		체 육 학 사	

[2022학년도]

학부(과)	전공	학위수여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융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뷰 티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공 연 예 술 전 공	공 연 예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 웹 툰 전 공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연 극 영 화 학 사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스 포 츠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2021학년도]

학부(과)	전공	학위수여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융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뷰 티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공 연 예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션 전 공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연 극 영 화 학 사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스 포 츠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2020학년도]

학부(과)	전공	학위수여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융 합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뷰 티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공 연 예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셴 전 공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연 극 영 화 학 사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스 포 츠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2019학년도]

학부(과)	전공	학위수여	비고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한 지 공 간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미 술 조 형 전 공	미 술 학 사	
	뷰 티 패 셴 디 자 인 전 공	디 자 인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실 용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공 연 예 술 뮤 지 컬 전 공	공 연 예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애 니 메 이 셴 전 공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미 술 조 형 디 자 인 학 부	금 속 조 형 디 자 인 전 공	미 술 학 사	
디 지 털 콘 텐 츠 학 부	만 화 게 임 영 상 전 공	미 술 학 사	
공 연 예 술 학 부	연 극 영 화 전 공	연 극 영 화 학 사	
	음 악 전 공	음 악 학 사	
생 활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사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2018학년도]

학 과						학위수여		비 고							
한	지	공	간	조	형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실		용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공	연		예	술	유	지	컬		학	과	음	악	학	사	
생		활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사	
무			용			학				과	무	용	학	사	
미		술		조		형		학		과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애	니		메		이	션		학		과	미	술	학	사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과		디	자	인	학	사
금	속		조	형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미	술	학	사	
연		극		영		화		학	과		연	극	영	화	학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2017학년도]

학 과					학위수여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실		용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유		지		컬			학		과	음	악	학	사					
생		활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사					
무			용				학		과	무	용	학	사					
미		술		조		형		학	과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애		니		메		이		션	학	과	미	술	학	사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사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미	술	학	사			
연			극		영		화		학	과	연	극	영	화	학	사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2016학년도]

학	과	수 여 학 위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미 술 학 사		
연 극 영 화 학 과	연 극 영 화 학 사		
실 용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유 지 컬 학 과	음 악 학 사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생 활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사		
무 용 학 과	무 용 학 사		
문 화 재 보 존 예 술 학 과	예 술 학 사		
문 화 예 술 관 광 콘 텐 츠 학 과	문화예술경영학사		
미 술 조 형 학 과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애 니 메 이 션 학 과	미 술 학 사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뷰 티 패 션 디 자 인 학 과	디 자 인 학 사		

[2013~2015학년도 입학자]

학 과	수 여 학 위	비 고
한 지 조 형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만 화 게 임 영 상 학 과	미 술 학 사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학 과	문 학 사	
실 용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뮤 지 컬 학 과	음 악 학 사	
음 악 학 과	음 악 학 사	
생 활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사	
무 용 학 과	무 용 학 사	
문 화 재 · 보 존 학 과	문 화 재 학 사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사	
미 술 조 형 학 과	미 술 학 사	
시 각 디 자 인 학 과	미 술 학 사	
애 니 메 이 션 학 과	미 술 학 사	
경 호 무 도 학 과	체 육 학 사	
미 디 어 예 술 학 과	예 술 학 사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 부 (과)	전 공	수 여 학 위
미 술 · 디 자 인 학 부	한 지 · 조 형 디 자 인 귀 금 속 보 석 디 자 인	미 술 학 사
만 화 · 게 임 영 상 학 부	만 화 애 니 메 이 션 게 임 애 니 메 이 션	미 술 학 사
공 연 · 음 악 학 부	연 극 영 화 · 코 미 디	문 학 사
	실 용 음 악 뮤 지 컬 악	음 악 학 사
스 포 츠 복 지 학 부	스 포 츠 레 저 복 지	체 육 학 사
	무 용 복 지	무 용 학 사
문 화 재 · 문 화 재 보 존 학 과		문 화 재 학 사
글 로 벌 호 텔 관 광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사

[별표 3]

학교기업별 명칭,소재지,사업종목,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

번호	명 칭	사 업 종 목	관련학부(과)	주 소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학과(전공) : ○○○○ 학과(전공)
○○○○ 학사

위 사람은 이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위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 ○ ○

학위번호 : 예원예술대 ○○○○ - 학 - ○○○○

학 사 학 위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전 공				
	주 소	(전화)			
학 점 취 득 사	총 학 점	교 양 과 목 학 점	전 공 과 목 학 점		일반선택 과목학점
			전 공 필 수	전 공 선 택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사학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 ○ 박사 ○ ○ ○

학위번호 : 학점○○○○